#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83

발의연월일: 2020. 10. 20.

발 의 자 : 추경호 · 이 영 · 박수영

유경준 · 김용판 · 박성중

임이자 • 권영세 • 조명희

서일준 · 이명수 · 이종배

김영식・송언석・金炳旭

허은아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납세자로 과세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함. 이와 함께 대주주요건인 당해 법인 주식의 보유 금액이 2018년 이후 2차례 하향조정되었고, 2021년에는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될 예정으로 금융 투자자들의 불만과 주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합산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주식의 보유금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납세편의

를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1항제3 호가목).

####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현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은 주권상장법인은 100분의 1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2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4 이상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가
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	1)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	
도하는 주식등. <u>&lt;단서</u>	다만,
<u>신설&gt;</u>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
	주식의 비율은 주권상장
	법인은 100분의 1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
	스닥시장상장법인은 100
	분의 2 이상, 대통령령으

2) (생 략) 나.·다. (생 략) 4.·5. (생 략) ② (생 략) 로 정하는 코넥스시장상 장법인은 100분의 4 이 상으로 하고, 시가총액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주 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 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